

17세기 초 조선의 恩義兼盡論 논쟁과 그 정치사상적 의의

함규진*

차례

- I. 서론
- II. 仁과 義가 부딪힐 때 - 유교적 정범이론의 난문제
- III. 은의겸진론 논쟁의 추이
 - 1) 17세기 이전의 논쟁
 - 2) 17세기 초, 광해군대의 논쟁
 - 3) 이후의 논쟁
- IV. 은의겸진론 논쟁의 의의
- V. 결론

【국문초록】

仁과 義는 유교사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치이자 덕목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 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데, 정치사에서 통치자의 친족이 범법자가 되었을 때 親親을 중시해 관용을 베풀 것인가, 의와 법을 중시해 처벌할 것인가도 그런 경우였다. 유교 경전과 역사적 선례로는 이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 힘들었으며, 따라서 정치사상적 논쟁이 유발될 근거가 여기서 마련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본래 이 문제에 상황논리로 대응하거나, '되도록 인과 의의 두 가치를 모두 극진히 한다'는 恩義兼盡論을 해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7세기 초, 광해군대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사상적 조류는 임해군, 영창대군 등

*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조교수

역모 혐의자들의 처리를 놓고 신료들 사이에 관용론과 엄벌론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야기했으며, 이는 당시의 현실정치 추이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은의검진론은 劄論으로 왜곡되고 신료의 입장에서는 제기할 명분이 없으며, 의와 법에 어긋나는, 군주의 私恩을 중시하는 편법적 논의라는 통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런 편법적 논의를 제기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적 탄압의 빌미가 된다는 전례 역시 이루어졌다. 따라서 17세기 중반을 거쳐 조선 말기까지 은의검진론 논의는 위축, 감소되었는데, 그 결과는 통치자 친족의 범죄 처리 문제뿐 아니라 정치와 사상 전반에서 오직 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의 수립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정치사상의 자유와 범위를 협소하게 하며, 조선 정치체의 포용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은의검진론, 전은론, 광해군대, 조선정치사, 한국정치사상

I. 서론

범법자에게 법에 맞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은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사회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때로는 온정을 베풀어 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법권자의 자의에 따라 임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을 따를 수가 있다. 유공자를 특사하거나, 형편이 열악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등 그런 원칙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사법체제에서는 독특한 원칙, “통치자에게 친근한 사람의 범죄에는 벌을 감면한다”는 원칙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불공정한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고, 역모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은전을 베풀기가 어렵기도 했다.

그래도 유교의 親親 사상에 근거하여, 설령 중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법에 따라 중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조선왕조에서 통치자의 친족을 처리할 때마다 돌출했다. ‘아무리 중대한 죄를 지었더라도, 차마 인정상 어떻게 친족을 엄히 처벌한단 말인가’라는 인식뿐 아니라, ‘친족에게도 사정을 두지 않고 처벌하는 통치자라면 신하나 백성에게는 더욱 가혹하지 않겠는가’라는 인식까지 겹침으로써 이런 ‘관용론’은 때로는 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했다. 따라서 태종이나 세조는 분명 스스로의 뜻으로 정적인 친족들을 처형할 때도 ‘나는 차마 할 수 없다’며 겉으로는 처형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신하들의 거듭되는 요청에 ‘마지못해 응한다’는 모습을 연출했으며,¹⁾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유폐하고 임해군, 영창대군 등을 처형한 일은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명분의 하나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통치자와 가까운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은혜와 의를 함께 다한다(恩義兼盡)”는 것이 한동안 가장 올바른 원칙이라 통용되었다. 하지만 異論도 있었고,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논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17세기 초 광해군 집권기에 왕실 인사의 처벌 문제가 잇달음에 따라 은의겸진론을 둘러싼 논쟁은 가장 치열했는데, 이후 논쟁은 차차 감소되면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실종된다. 결국 왕실 인사 처벌 문제의 귀결이 ‘은혜보다는 법적 공평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식으로 남으로써, 전통적인 유교정치사상에서 인, 친친의 가치는 한 발짝 물러서며, 상대적으로 의의 가치가 강화되는 양상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7세기 초 정치사를 중심으로 은의겸진론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을 살펴보되, 주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1) 가령 『太宗實錄』 19권, 太宗 10년 3월 17일(癸未) 기사: 『端宗實錄』 端宗 8권, 1년 10월 17일(庚子) 기사.

했으며, 일부 동양 고전에서 논쟁자들의 전거로 사용된 근거를 찾아보고 풀이하며, 주요 논쟁자들의 문집도 참고했다.

선행연구로서 조선의 政法 체계와 이념을 ‘법의 윤리화’, ‘예법 질서’ 등으로 풀이한 연구는 많으나 대체로 유교윤리에 따라 친족간의 범죄를 더 엄히 처벌하는 경우(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해치는 경우 등)에 주목했지, 친족의 범죄를 관대히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다.²⁾ 또한 17세기 정치사에 대한 연구도 숭하지만 은의검진론 논쟁에 주목하는 경우는 적고, ‘은의검진론’이 아닌 ‘奎恩論’으로 풀이하여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논문은 그러한 연구의 공백에 착안하여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갖고 시도된 것이다.

II. 仁과 義가 부딪힐 때 - 유교적 정법이론의 난문제

적어도 맹자 이래로 인과 의는 유교의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이며, 필수불가결한 두 원칙이자 가치로 존립해왔다. 하지만 그 자체의 의미가 불확실하고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과 의가 서로 대립되는 듯한, 두 근원적인 덕목 중 하나를 희생시켜야 할 수밖에 없는 듯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통치자와 친한 사람

2) 이재룡, 『조선, 예의 사상에서 법의 통치까지』(서울: 예문서원, 1995);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박병호, 「한국에 있어서의 孝 가치관과 法」(일본문학심포지엄 주최 『동아시아에서의 인권과 정의』 발표문, 2000); 최종고, 『한국법사상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1(전정신판)).

이 물의를 빚었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런 곤란한 상황이었다.

공자는 일찍이 이런 상황에서 인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다.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기를, “우리네 사람들 중에는 참 곧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고발했습니다.”라 하였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곧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숨겨 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 줍니다. 그런 가운데 곧음이 있습니다.”³⁾

‘곧다(直)’, ‘정직하다’는 통상적인 의미를 패리디했다고도 볼 수 있는 공자의 이 말은 이른바 ‘동양적 온정주의’의 대표적 근거로 곧잘 인용되곤 한다. 하지만 공자가 이 대목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전혀 비합리적인 행동방식을 바람직한 윤리적 행동방식의 하나로 권고했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의 순수함 여부에 주목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친족을 감싸려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버지의 범죄를 고발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거나 상을 타려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결과일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런 불순한 마음의 소유자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섭공이 예로 든 ‘곧은 사람’을 불신하고 차라리 부모자식 사이에 서로 덮어주려 하는 모습에서 곧음을 볼 수 있다고 반론한 것으로 보인다.

맹자도 우리의 문제와 연관성이 큰 진술을 남기고 있다.

3) 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 『論語』「子路」, 18

도응이 묻기를, “순임금이 천자가 되고 고요는 판관이 되었는데, 고수가 살인을 하였다면 어찌하였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법대로 집행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순임금이 막지 않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순임금이 막겠는가? 직책을 그에게 위임했거늘.”

“그렇다면 순임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맹자께서 이르기를, “순임금은 천하를 버리기를 마치 현 짚신 버리듯 하고, 몰래 그 아버지를 업고 달아나 바닷가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혼연히 즐거워하면서 천하를 잊었을 것이다.”⁴⁾

공자의 예가 통치자의 친족을 소재로 하지는 않았으며 ‘숨겨준다’는 비교적 소극적인 행동만을 제시했던 반면, 여기서는 비록 가상이지만 최고권력자가 죄를 지은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함께 도피하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맹자의 사례는 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듯 보이지만, 다르게 보면 반대로 법의 엄중함을 공자보다 중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판관(고요)은 사정을 두지 않고 법을 집행해야 하며, 군주는 아무리 자신의 부모라고 해도 특례를 베풀려면 군주직을 포기하고 자신도 죄인이 되어야 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자와 맹자의 논설을 보아도 仁과 義, 또는 恩과 法의 관계를 명쾌하게 가늠하기란 어려운데, 한편 『예기』에는 “비록 천자의 친인척과 가까운 자라도 금지된 것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⁵⁾는 구절이 있고 후대의 주석에서 이를 “천자의 친인척은 사치하기 쉬우며, 가까운 자는

4) 桃應問曰, “舜爲天子, 臯陶爲士, 瞽瞍殺人則如之何?” 孟子曰, “執之而已矣.” “然則舜不禁與?” 曰, “夫舜惡得而禁之? 夫有所受之也.” “然則舜如之何?” 曰, “舜視棄天下, 猶棄敝屣也. 竊負而逃, 遵海濱而處, 終身訢然樂而忘天下.” 『孟子』「盡心, 上

5) 是月也, 命奄尹申宮令. 審門閭. 謹房室, 必重閉. 省婦事, 毋得淫. 雖有貴戚近習, 毋有不禁. 『禮記』「月令,

교만하기 쉬우니, 법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신분이 귀하고 군주와 가까운 자들부터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⁶⁾고 해석함으로써 법의 공정함과 엄정함 앞에는 仁을 따질 여지가 없다는 근거로 거론되기도 했다.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정법의 규율을 명시한 경우로, 『주례』에 ‘八僻’ 또는 ‘八議’가 있어서 통치자 친족의 범죄를 관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다. 議親, 議故, 議賢, 議能, 議功, 議貴, 議勤, 議賓의 여덟 가지 범주에 드는 경우는 참작하여 의논을 거쳐 그 형벌을 감면한다는 것인데,⁷⁾ 이 중 ‘議親’은 범죄자가 통치자의 친족일 경우다. 이 ‘八議’는 중국의 삼국시대에 위나라의 법전에 처음 명문화된 이래 唐律, 大明律 등에 수용되어 내려오면서 조선에서도 실제 적용되는 행형원칙의 하나가 된다.

하지만 漢 이후로 謀反, 謀大逆, 謀叛, 惡逆, 不道, 大不敬, 不孝, 不睦, 不義, 內亂 등의 ‘十惡’에 해당되는 범죄라면 비록 팔의에 드는 사람이라도 형벌을 감면할 수 없다는 원칙도 이루어졌으며, 이 역시 당률, 대명률 등에 명문화되어 조선의 법제에 이식되었다. 그래서 조선 왕실 인사의 범죄나 공신의 범죄를 다스리는 문제에서 ‘이는 팔의에 해당되므로 곧이 곧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⁸⁾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팔의뿐 아니라 십

6) 貴戚易奢, 近習易驕. 欲法之行, 自貴近始. 오승기, 『禮記菁華錄』 권3

7) 以八辟麗邦法附刑罰. 一曰議親之辟, 二曰議故之辟, 三曰議賢之辟, 四曰議能之辟, 五曰議功之辟, 六曰議貴之辟, 七曰議勤之辟, 八曰議賓之辟. 『周禮』「秋官」, 『小司寇』

8) 가령 據法論罪, 所當鞠問, 然以勳親, 在於八議. 願將居易, 佇及同心結黨天祐等, 安置于外, 使銷驕悍之氣, 以生悔悟之心, 然後使還于朝, 復其封邑, 則禍孽不作, 長保富貴, 殿下有保全之德, 彼亦享安榮之福. 『定宗實錄』 4권, 定宗 2년 5월 8일(壬申) 기사; 凡功臣妻妾犯罪, 而冀免其罪者非一, 然無立法, 未敢處決. 今考 『大明律』名例, 八議三曰議功, 注云, ‘有大勳勞, 銘功大常者.’ 右律應議者之父祖有犯條, ‘凡應入八議者之祖父母, 父母, 妻及子孫犯罪, 定議奏聞, 取自上裁.’ 據此參詳, 婦女從夫者也, 而所生子孫, 則并蒙其蔭, 獨妻妾未蒙, 有虧令典. 自今功臣祖父母, 父母, 妻及功臣子孫犯罪者, 依律文免罪, 其有子息之妾, 并許免罪, 以廣盛代懋賞之典. 『世祖實錄』 7권, 世祖 3년 4월 20일(癸丑) 기사; 樂安郡守李萬圃, 光陽縣監朴東亨俱以田稅未捧被拿. 法當決杖, 而雖云卑微, 乃是親功臣, 則宜有議功之道矣. 『英祖實錄』 36권, 英祖 9년 10월 28일(丙子) 기사.

악에도 해당되니 용서는 있을 수 없다⁹⁾는 주장이 팔의를 들어 관용하자는 주장과 팽팽히 맞서는 일이 많았다.

팔의와 십악에 모두 해당되면서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했던 왕실 관계자의 역모 처리를 다룰 경우에는 경전에 담긴 사상과 법제뿐 아니라 역사 기록 및 전설 역시 논쟁의 전거로 양 쪽에서 활용되었다. 의 또는 법을 중시하는 쪽에서 가장 자주 드는 역사적 사례는 중국 주나라의周公이 역모를 일으킨 친형제 管叔과 蔡叔을 처벌했다는 고사였다.¹⁰⁾ 또한 ‘大義滅親’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었다는, 춘추시대 위나라의 대부 石碻이 역모에 가담한 아들 石厚를 죽인 고사도 많이 거론되었다.¹¹⁾

9) 가령 孝貞曰, “如是則彼尤感概, 必增怨懟, 請須依法.” 上曰, “詐不以實, 雖云可罪, 律有八議, 何敢罪之?” 宗瑞曰, “十惡之罪, 不用八議.” 『世宗實錄』 39권, 世宗 10년 1월 16일(己亥) 기사; 傳曰, “卿等以予爲伸私恩, 然則高皇帝之律, 何以有八議乎?” 臺諫更啓, “高皇帝, 雖有八議之律, 人有犯罪, 必推鞠得情. 定罪之時, 以此八事, 議之. 豈以此, 全釋也? 且高皇帝, 雖有八議, 又設十惡之律. 犯此十惡, 則不容於八議也. 今湯老之罪, 刑推服招, 然後容或可議. 豈可未取服, 而貸之也? 請窮推.” 『燕山君日記』 6권, 燕山君 1년 6월 27일(戊寅) 기사; 及第黃廷彧, 陷在賊庭, 反面屈膝, 以關伯稱殿下, 於本朝不稱臣, 偃然通書, 至請割地, 背本國, 從他國, 罪關十惡. 此八議之所得應議者, 而特以年老元勳之故, 既許放歸, 聖上優老待功之意, 至矣盡矣. 雖使之老死田里亦榮矣. 豈合全釋其罪, 復使偃息於都下哉? 放送之命一下, 物情莫不痛憤, 請命還收. 『宣祖實錄』 152권, 宣祖 35년 7월 26일(乙酉) 기사.

10) 가령 昔管蔡流言於國, 以周公之仁聖, 不能以私滅義, 置之極刑, 以安周室. 況姻親乎? 『太宗實錄』 16권, 太宗 8년 10월 1일(乙亥) 기사; 今上之輔政, 卽周公之攝政也. 瑜等之兇謀, 卽管蔡之煽亂也. 管蔡流言, 將危周公, 以搖王室, 則是非周公一身之利害, 周公豈得而私之哉? 『世祖實錄』 2권, 世祖 1년 11월 24일(乙未) 기사; 周公誅管蔡也, 不誅管蔡, 而可以鎮安國勢, 則以周公之聖, 豈至於致辟? 而蓋以管蔡不誅, 則雖欲鎮國勢, 而不可得焉故耳. 譬之於養苗, 不薙其狼莠, 而欲禾穀之繁茂, 譬之於治病, 不去其痞積, 而欲元氣之充養, 此必無之理也. 『純祖實錄』 2권, 純祖 1년 4월 27일(癸酉) 기사.

11) 가령 石碻布其子厚弑君之惡于陳人, 懷光石厚皆就誅戮, 而前史不以爲非. 大抵事有關於國家大體, 則子不能掩其父, 父不能掩其子, 深源之論士洪, 有何不可? 『成宗實錄』 96권, 成宗 9년 9월 6일(甲子) 기사; 成帝知王氏之專盛, 欲斷如薄昭, 而牽於情愛, 不剪王氏, 終成篡逆之謀. 大義滅親, 故石碻殺厚. 今乃斷以大義宜當. 『中宗實錄』 75권, 中宗 28년, 6월 2일(癸酉) 기사; 身爲當國首相, 不能斷以大義, 毅然爲石碻之事, 卒使之不軌陰謀, 自其家釀出, 在家不知, 臣未之信也. 『正祖實錄』 43권, 正祖 19년 10

그러나 인을 중시해야 한다는 쪽에서 즐겨 드는 고사도 있었으니, 舜 임금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복동생 象에게 보복하지 않고 평생 제후의 지위를 보장했다는 사례다.¹²⁾ 또 漢文帝 때 반란을 일으킨 淮南王을 용서한 사례¹³⁾와 唐太宗 때 역모를 꾸민 태자 李承乾을 살려준 사례¹⁴⁾도 인 용되곤 했다.

이처럼 통치자와 친근한 자의 처벌 문제는 인과 의(또는 법) 중에서 어느 쪽을 강조할 것이냐를 두고 유교 사상과 관행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면 인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죄 자체를 불문에 붙인다고 보다는 처벌은 하되 친족의 차마 어찌지 못하는 정을 고려하여 극단의 처벌은 피한다, 또는 최대한 신중히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그것이 바로 은의겸진론의 내용이였다. 조선조에서는 초기부터 이를 통치자 친족의 처벌시의 적용 원칙으로 많이 거론하였다.¹⁵⁾

월 13일(庚寅) 기사.

12) 가령 傳曰, “大舜不殺象, 予不能從也.” 『端宗實錄』 8권, 端宗 1년 10월 17일(庚子) 기사; 以予不忍之心, 固不得以罪之也. 且萬章問於孟子曰, ‘象日以殺舜爲事, 立爲天子, 則放之有庫何也?’ 孟子曰, ‘封之也, 人以爲放也. 仁人之於兄弟, 不藏怒焉, 不宿怨焉, 親愛之而已.’ 以此觀之, 雖其所自爲之事, 古之人猶且處之如此, 況兄弟之間, 昭然知其不知, 而猶復罪之, 予何忍耶? 『明宗實錄』 2권, 明宗 즉위년 9월 11일(辛未) 기사; 象日以殺舜爲事, 舜爲天子, 封之. 夫以弟而謀兄, 人倫之人變也. 當時四凶之惡, 疑不至此, 而然而舜於四凶則流殛之, 在象則封之. 『仁祖實錄』 47권, 仁祖 24년 2월 23일(庚子) 기사.

13) 가령 上曰, “上王嘗語予曰, ‘昔淮南王謀反, 漢猶不殺, 史策美之. 我欲效漢文, 保全芳幹.’ 予以是, 未得請也.” 『世宗實錄』 2권, 世宗 즉위년 11월 3일(己酉) 기사. 다만 회남왕의 고사는 그가 사형은 면했지만 유배형을 얻었고, 귀양 가는 길에 죽었으므로 은혜가 온전하지 못한 사례로 해석되기도 했다. 가령 昔漢文帝雖賢, 於明德無聞焉, 故尙不容淮南王. 『中宗實錄』 34권, 中宗 13년 7월 21일(戊午) 기사.

14) 가령 世祖啓曰, “瑠骨肉至親, 爲群邪所汚, 以至於此. 今羽翼既剪, 且在絕島, 臣等在, 復何能爲反?” 復引唐(太)宗之事明之. 因泣下交頤, 固言不當死, 乃入小房痛哭. 『端宗實錄』 端宗 8권, 1년 10월 17일(庚子) 기사.

15) 가령 自古人君遭人倫之變, 必恩義兼盡而後處之, 得其道而爲法於後世也. 『世宗實錄』 18권, 世宗 4년 12월 4일(丁亥) 기사; 仰遵聖考之昭訓, 俯循臣僚之至情, 姑從前式,

대저 親親에는 은혜를 주로 하는 것이고, 은혜를 행함은 의리를 주로 하는 것인데, 만일 은혜에만 치우치면 의리를 해치고, 의리에만 치우치면 은혜를 상하므로, 반드시 은혜와 의리를 겸해서 다한 연후에야 敦睦의 道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¹⁶⁾

성종대에 장원군 이성의 처벌 문제를 두고 李則이 경연에서 제기한 이 발언이 은의겸진론의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17세기로 접어들며 이런 은의겸진론은 '무턱대고 은혜를 베풀기만을 고집하여, 의리를 무너뜨리고 법을 왜곡하는' '歪恩論'으로 곡해되었으며, 은의겸진론을 거론하는 사람은 곧 不忠, 不義한 자라는 식의 공격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통치자의 친족에게 주어진 범죄 혐의를 처리할 때 인을 중시할 것이냐, 의를 중시할 것이냐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Ⅲ. 은의겸진론 논쟁의 추이

1) 17세기 이전의 논쟁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은의겸진' 표현은 9회, 비슷한 의미인 '恩義兩全'의 표현은 14회 언급된다. 전자는 광해군 즉위년(1608년) 3월 21일에 마지막으로 쓰이며, 후자는 은의겸진과 같은 의미로는 효종 5년

則繼述之意、從諫之美、一舉兩存、而恩義兼盡矣、伏惟留意焉。『世宗實錄』 79권, 世宗 19년 12월 21일(戊寅) 기사; 臣等竊惟親親主於恩、惡惡主於義、一於恩則傷於義、一於義則傷於恩、必恩義兼全而不失其中、然後敦睦之道盡矣。『成宗實錄』 89권, 成宗 9년 2월 11일(甲辰) 기사.

16) 大抵親親主於恩、行恩主於義、若一於恩則害義、一於義則傷恩、必恩義兼盡、然後敦睦之道備矣。『成宗實錄』 89권, 成宗 9년 2월 11일(甲辰) 기사.

(1654년) 10월 16일이 마지막 용례이고, 이후 왕실 인사의 처벌 문제와는 동떨어진 맥락인 왕실 인사에 대한 특례 부여 문제(경종 즉위년 12월 28일), 왕세자의 훈육 방침 문제(영조 33년 11월 11일)등의 논의에서 간간이 언급된다. 반면 '전은'은 247회 언급되는데, 그중 17세기 이전에 쓰인 예는 네 번에 그치며, 주로 그 이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말하자면 17세기 이전까지의 조선 전기에 벌어졌던 왕실 인사의 처벌 문제들, 태조대의 종친 李朝 처리, 태종의 이방간, 민무구, 민무질 등의 숙청이나 세종의 양녕대군 처리, 세조의 단종과 안평대군, 금성대군 숙청, 성종의 월산대군, 창원군 처리 등의 문제에서 주된 논의는 상황에 따라 은전을 베풀거나 엄격히 처벌하거나를 양자택일하는 상황론¹⁷⁾이 아니면 은의겸진론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전은'은 대체로 임금의 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며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엄벌론자들의 발언에서 간간이 언급되었다.¹⁸⁾ 말하자면 17세기 이전의 조선 정치사에서는 은의겸진이니 전은이니 하는 논의가 정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일이 드물었다. 태종의 민무구·민무질 처리나 세조의 단종 처리 등은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을 겹보기로만 의논하는 일에 가까웠고, 태조의 이조 처리나 성종의 창원군 처리 등은 정치적으로 그리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다만 세종대의 양녕대군 처리 문제를 놓고서는 대소신료들이 집무를 거부하고 장

17) 가령 閔曰, 殿下若罪朝, 則親親之恩傷矣, 不罪朝, 則法令廢矣。 朝不出, 殿下親親之恩全, 而法令不廢矣, 何索之太甚耶? 『太祖實錄』 6권, 太祖 3년 6월 1일(己巳) 기사: 臣等以爲, 罪有大小, 典有重輕, 各適其當而已。 亂逆大罪, 覆載所不容, 豈有姑息寬假之理乎? 不廢懿親, 在小忿則可, 遇大惡, 則其可乎? 務從寬典, 斷微犯則可, 處重罪則其可乎? 『世祖實錄』 1권, 世祖 1년 윤6월 16일(庚申) 기사.

18) 가령 彼咨父子, 以賊之首, 獨漏天討, 殿下縱欲全恩, 其於天地祖宗默佑之意何如? 『睿宗實錄』 2권, 睿宗 즉위년 11월 2일(戊午) 기사: 殿下釋而不問, 屈法全恩, 違先王之法者, 果如是乎? 『成宗實錄』 289권, 成宗 25년 4월 25일(癸未) 기사.

기간 엄벌을 요구하는 등의 심각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양녕대군이 워낙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 데다 세종의 왕권에 신료들이 집단적으로 도전하는 성격이 있었기에 사안이 커진 것이며, 이때도 인과 의의 선택을 놓고 치밀한 논쟁이 전개되지는 않았다.

2) 17세기 초, 광해군대의 논쟁

그러나 임진왜란의 후유증이 크게 남은 가운데 당쟁이 급속도로 심화되면서 서로의 실수를 빌미로 공격할 기회를 날로 엿보고 있던 17세기 초, 광해군대에 들어오면서 이는 정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된다. 광해군 즉위년(1608년) 3월 21일, 영의정이던 이원익은 임해군의 옥사와 관련해 올린 상소에서 조선왕조실록상 최후의 ‘은의겸진’ 표현을 언급한다.

지금 역옥이 막 일어나서 사체가 매우 중한데 신이 수상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국문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죄인들 가운데 혹 不軌스러운 일에 대해 말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 상세한 곡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머리털이 곤두서고 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禍가 至親 사이에서 일어났으니 진하의 타고난 지극한 우애에 미루어 걱정하고 슬퍼하고 통박스러워 하시면서 의당 지극하게 조치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의를 겸하여 극진히 하는(恩義兼盡) 데 대해서는 반드시 이미 따져 보셨을 것이니, 이에 관해서는 신이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도당 가운데 역적을 모의한 정상이 현저히 드러난 자에 이르러서는 당연히 律에 의거 처치해야 하는 것이니, 이 점에 대해서는 무슨 의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단지 염려되는 것은 崑崗에 불이 나서 玉石이 함께 타듯이 큰 옥사를 다스리는 사이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반드시 많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¹⁹⁾

19) 況今逆獄方起，事體至重，臣忝首相，久未參鞠，各人或有言其不軌之事，則雖未得其曲折之詳，而聞來不覺髮豎而體粟，禍起於至親之間，以殿下天至之友愛，其憂傷痛迫，宜無所不至，恩義兼盡必已有定算，此則臣不敢有言，至於徒黨之逆狀著顯者，則當按律處之，尙

일단 ‘무고한 죄인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平反해야 한다’는 주장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역모 혐의를 받고 있던 임해군에 대해 은과 의를 모두 극진히 하여 최악의 경우에도 그 생명은 보존해야 한다는 은의 검진론에 따른 처방을 주문한 것이었다. 3월 26일에는 대사헌이던 鄭述가 역시 임해군을 관대히 처분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며, “은과 의를 모두 참작하여 변통시켜 선처할 것(參酌恩義, 變通善處)”을 주장했다.²⁰⁾ 이 들보다는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영중추부사 이덕형, 좌의정 이항복, 우의정 심희수 등도 대체로 관용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간 이이첨, 헌납 임연 등을 비롯한 대북 계열 인사들은 대간의 직분에 의거해 임해군을 엄벌에 처해야만 한다고 역설했으며, “임금은 혹시 全恩을 중시할 수 있어도 신하된 도리로는 오직 역적을 토벌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²¹⁾며 은의검진론을 진은론으로 치부하는 한편 관용론자들을 신하의 도리를 어기는 사람들로 매도했다.

광해군은 이런 논쟁이 격화되면서 이원익, 이항복, 심희수 등이 사의를 표명하자 그들을 만류하며 “大臣과 臺諫은 직위가 서로 다르다. 법대로 집행하자는 의견과 은혜를 온전히 하자는 의견을 함께 주장하더라도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²²⁾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마침내 임해군을 유배 보낸 다음 그것을 “은과 의를 모두 참작한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다.²³⁾

何議爲? 但念崑崗之火, 玉石俱焚, 大獄之下, 冤死者必多. 『光海君日記』 2권, 光海君 즉위년 3월 21일(戊申) 기사.

20) 『光海君日記』 2권, 光海君 즉위년 3월 26일(癸丑) 기사.

21) 若以聖上之全恩爲重, 則在下之道, 惟知討逆. 『光海君日記』 4권, 光海君 즉위년 5월 26일(辛亥) 기사.

22) 大臣與臺諫, 職位不同. 全恩之議, 何傷於並行乎? 『光海君日記』 5권, 光海君 즉위년 6월 15일(庚午) 기사.

23) 參酌恩義, 既置于外方, 法已行矣, 何必盡律? 『光海君日記』 6권, 光海君 즉위년 7월 2일(丙戌) 기사.

그러나 동년 7월 7일에 광해군이 무척 존경했으며 대북 당파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지던 정인홍이 대사헌으로서 상소를 올리면서 은의겸진론이 우세한 듯했던 정국은 뒤바뀐다.

역적의 괴수 이진(임해군)이 반역을 도모하여 죄가 不道에 들어가니, 天討이 마땅히 내려져야 할 것이며 王法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료의 입장에서 그를 주벌할 수는 있으나, 다른 의논을 용납할 수도 제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은혜를 온전히 해야 한다는 말이 갑자기 그들 사이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이로 인해 못사람들이 의혹하고, 국론이 둘 셋으로 나뉘어 장차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게 되었으니, 어찌 人心과 勢道의 망극함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이야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신은 삼가 생각건대, 은혜를 온전히 해야 한다는 말이 역모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獄事의 형세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을 때 나왔다면, 진실로 임금의 미덕을 빼앗아서 은혜가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한 것이 되며, 역모의 형적이 이미 갖추어져 그 실정이 모두 파악된 뒤에 나왔다면, 이 두 글자(全恩)는 또한 마땅히 신하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그 마음에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 옥사가 성립된 뒤에 은혜를 온전히 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서 꺼내는 사람은, 역적을 비호하는 私心이 있는 것이 아니면 바로 전하를 안중에 두지 아니한 것입니다.²⁴⁾

정인홍은 ‘대신은 직분상 관용론을 펴는 것이 옳다’는 광해군의 주장을 일축하고, “신료의 입장에서는 그를 주벌할 수는 있으나, 다른 의논을

24) 逆魁肆謀爲不軌，罪入不道，天討之所當加，王法之所不貸。凡在臣僚，得以誅之，不容有他議，不得有異議也。奈何全恩之說，遽出於其間？物情因而疑惑，國論以此二三，將有不可忍言者，豈謂人心世道之罔極至此也？臣竊以爲，全恩之說若起於逆狀未明、獄勢未成之前，則固不免掠上之美歸恩於己也。出於逆形已具，其情畢得之後，則此二字不當出於人臣之口。非惟不當出於口，豈合一毫作於其心乎？(……) 以此而獄成之後，以全恩發口者，非有護賊之私，卽不有殿下也。『光海君日記』6권, 光海君 즉위년 7월 7일(辛卯) 기사.

용납할 수도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앞서 이이첨 등이 제기한 관용론자 공격 논리를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강화했다. 그는 오직 군주만이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으므로 ‘역모 수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관용을 제기했다면 임금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역모가 입증된 다음에는 신하로서 ‘전은(全恩) 두 글자는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군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역적을 변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하로서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불충, 불의한 태도라는 것이다.

정인홍은 나아가 통치자 친족의 범죄에 대한 관용은 어떤 가치를 지닌 덕행이라기보다 통치자 개인의 私情에 불과하며, 적어도 역모를 처리할 때는 그런 사정을 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역적을 토벌하는 것은 신하의 공변된 의리이며 은혜를 펴는 것은 임금의 사사로운 인정이니, 인정이 소중한 경우에는 의리가 혹 서로 가리워질 수도 있고, 의리가 있어야 할 경우에는 인정이 참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적을 토벌하는 것은 천하 고금에 변할 수 없는 떳떳한 의리이며, 은혜를 펴는 것은 한 때에 임금이 사사로운 은혜나 정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²⁵⁾

이는 통치자 친족을 처벌하는 문제는 인과 의 중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과 사의 충돌 문제이며, 통치자의 친족 일지라도 엄벌에 처해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천하 고금에 변할 수 없는 떳떳한 의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인홍은 관용론의 이론적 타당성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엄벌론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대안이라는

25) 討逆者, 臣子之公義也. 伸恩者, 人主之私情也. 情之所重, 義或相掩. 義之所在, 情固不行. 故討逆者, 天下古今不易之經義也. 伸恩者, 一時君父念鞠哀之美意也. 위의 기사.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다. 이는 앞서 논의되던 “은혜에만 치우치면 의리를 해치고, 의리에만 치우치면 은혜를 상하”게 된다는 주장을 배격하고 오직 의리를 “천하 고금에 변할 수 없는 떳떳한” 가치로 내세우는, ‘全義論’으로 부름직한 주장이었다.

뒤이어 11월 15일에는 역시 대북에 속해 있던 부호군 곽재우가 상소를 올려 ‘전의론적’ 엄벌론을 전개했다.

아, 역적 이진에게 형제의 은혜를 온전히 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누가 꺼낸 말입니까? 장차 나라를 망치려고 한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은 옳은 것 같으나 그르고, 이치에 가까운 듯하나 왜곡되어 있으므로, 신은 그 말이 법을 어지럽히고 의리를 어지럽힌 것을 미워합니다. 법을 어지럽힌 폐단은 장차 법이 없는 세상을 초래할 것이며 의리를 어지럽힌 환란은 반드시 의리가 사라진 세상에 이르고 말 것인데, 법이 없고 의리가 없어지면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의리와 법은 공적인 것이고 은혜와 인정은 사적인 것입니다.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은혜가 의리를 이겨낼 수 없으므로, 법이 있는 곳에는 은혜와 인정을 굽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처럼 의리와 법을 범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필시 모두 ‘나라의 일이 오직 은혜와 인정만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할 것이니, 장래의 화란이 나라를 잃는 데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 옛날 관숙과 채숙이 헛말을 퍼뜨리자 주공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주공은 위대한 성인입니다. 우애의 정이 어찌 천하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공이 형제의 은혜를 온전히 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왕실에 죄를 지어서였습니다. 더구나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壽命이 새로워서, 治化를 이루어 천하가 화평하고 백성들 마음이 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니, 이 당시에 관숙과 채숙이 살아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화란을 빚어내겠습니까. 그런데도 주공이 꼭 법에 의해 그를 죽였던 것은 어찌 은혜와 인정이 박하여 그랬겠습니까. 왕실에 죄를 지어 죽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²⁶⁾

26) 逆肆全恩之說，誰作俑者？其將以喪邦乎？此之爲說，似是而非，近理而曲，臣竊惡其亂

곽재우는 “천하 고금에 변할 수 없는 떳떳한 의리”를 강조했던 정인홍의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거의 법가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 관용론이 ‘나라를 망치는’ 주장이며 반드시 엄벌을 선택해야만 할 까닭은 첫째,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며 둘째, 법에 그렇게 정해진 이상 아무리 군주의 권력이 클지언정 법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도 정인홍 등처럼 임해군에게 사형을 면제하는 일에 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적 의미는 전혀 없고 단지 광해군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라고 보았으며, 사정에 따라 법을 공평히 적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백성들의 준법 의식이 해이해질 것이며 국가질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또한 실익을 떠나 법은 법 자체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관속, 채속이 실제로 주왕조에 위협은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굳이 처단할 정치적 필요성은 없었는데도 주공은 그들을 법대로 처단했다. 왜냐하면 처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不得不誅也), 라고 주장한다. 이는 유가보다 법가의 사상에 가까울뿐더러 조금 더 발전시키면 근대적 법치주의와 연결될 수도 있는 독특한 관점이었다.

임해군이 이듬해(광해군 1년, 1609년)에 강화도로 이배된 다음 살해되고, 은의겸진론의 주축이었던 이원익과 정구는 사직하거나 사실상 사직함으로써 임해군 처리와 관련한 논쟁은 엄벌론의 우세로 정리되는 듯했다. 논쟁이 재연된 광해군 5년(1613년)의 ‘계축옥사’ 때는 임해군 때와는 달리 권력구도상 대북이 우세를 점하고 있었고, 광해군도 은의겸진론을

法而亂義。亂法之弊，將至於無法，亂義之患，必至於滅義，無法，滅義，國能存乎？義與法，公也。恩與情，私也。私不勝公，則恩不可以勝義，法之所在，恩情不得不屈，則國人皆曰，‘義與法之不可犯也如此。’不然必皆曰，‘國事惟以恩情爲重。’將來之禍，其不至於喪邦乎？(……) 昔管蔡流言，周公誅之。周公，大聖人也。友愛之情，豈輕於殿下，而周公之不能全恩者何也？以罪在王室也。而況周雖舊邦，其命維新，致治雍熙，民心皞皞，當是時也管蔡存，焉能構禍？而周公之必致辟者，豈其恩情之薄耶？罪在王室，不得不誅也。『光海君日記』10권, 光海君 즉위년 11월 15일(戊戌) 기사.

두둔하던 입장에서 엄벌론이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어²⁷⁾ 관용론자들의 입지는 불안했다. 『조선왕조실록』은 임해군 이래 “전은론이 세상에서 크게 금하는 논의가 되었다”²⁸⁾고 하며, 계축옥사를 전후해서는 이미 “舊臣과 名士로서 조정에 간신히 용납받아 오던 자들도 모두 逆黨이라는 명목으로 쫓겨나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²⁹⁾고 적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덕형이 김제남의 처리를 두고 “國舅은 八議에 해당되는데, 死刑은 옳지 않다”고 발언했고 또 광해군 5년 8월 18일의 상소에서 ‘이의(영창대군)는 비록 역모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나이가 어리니 법적으로 중벌에 처할 수 없다’는 완곡한 관용론을 펼쳤다가³⁰⁾ 엄벌론자들의 공격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그러자 이원익이 8월 20일에 상소를 올려,

은혜를 온전히 해주어야 한다는 논의를 두고 역적을 놓아주고 임금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조사 대질했던 날에는 신이 수상의 자리에 있었으며, 전은의 설은 신이 실로 맨 처음 발론한 것입니다. 불충하고 임금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하의 極罪이니, 참으로 황송하고 두려워 죽고자 해도 되지 않습니다.³¹⁾

이처럼 밝히고 아울러 “신료 가운데 어찌 한 터럭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임금을 잇은 채 역적을 두둔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만약 의

27) 『光海君日記』 69권, 光海君 5년 8월 16일(辛丑) 기사.

28) 自是全恩之說, 爲世大禁. 『光海君日記』 57권, 光海君 4년 9월 29일(庚申) 기사.

29) 時, 舊臣名士, 僅容於朝者, 皆以逆黨, 見逐殆盡. 『光海君日記』 69권, 光海君 5년 8월 16일(辛丑) 기사.

30) 『光海君日記』 69권, 光海君 5년 8월 16일(辛丑) 기사.

31) 全恩之論, 爲縱賊危君, 查質之日, 臣忝首相, 全恩之說, 臣實首發. 不忠危君, 人臣極罪, 誠惶誠懼, 求死不得. 『光海君日記』 69권, 光海君 5년 8월 20일(乙巳) 기사.

견이 조금 다르고 논의가 조금 온당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연루시키고 파급시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으로 갑자기 빠뜨린다면, 아마 나라의 복이 아닐 것입니다.”³²⁾라고 당시 상황의 부당성을 광해군에게 표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은의겸진론의 중심 인물이던 이원익이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전은론’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완곡한 어법으로 자신의 주장이 전은론이 아닌 은의겸진론이며, 그 점을 왜곡할 뿐 아니라 정치사상적 논의가 아닌 현실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상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이첨이나 정인홍 등의 주장처럼 임해군, 영창대군 등에 대한 관용론이 ‘비록 역적이라 해도 왕실의 지친이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전은론이라면 그야말로 ‘역적을 놓아주고 임금을 위태롭게 하는(縱賊危君)’, 또는 ‘역적을 옹호하고 임금을 위협하는(護逆脅君)’ 주장일 것이며, 신하의 입장에서는 “털끝만큼이라도 그 마음에 생각해서”도 안 될 부적절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은의겸진론의 왜곡일 뿐이고, 은의겸진론은 仁의 정신과 親親의 원칙을 현실정치에서 구현하기 위해 통치자 친족의 범범은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되 그 목숨까지 빼앗지는 않으려는 주장인 것이다. 결코 ‘국법을 무시하고’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원익은 이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기보다 ‘나나 정구의 주장이 정말 전은론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신료 가운데 어찌 한 터럭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임금을 잊은 채 역적을 두둔하는 자가 있겠”는가 하는 전제를 두고 “의견이 조금 다르고 논의가 조금 온당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연루시키고 파급시켜” 중요한 국정 관련 쟁점을 두고 논의를 중지하고, 소통을 차단하며,

32) 自餘臣僚，何曾有一毫他意，而忘君護逆者哉？若以意見之差殊，論議之失當，連逮濫及，而遽陷不測之地，則恐非國家之福也. 위의 기사.

정쟁을 확대하는 일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원익이 이처럼 완곡한 어법으로 은의검진론을 옹호한 것은 직접적인 어법이 가져올 분란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11월 10일에는 은퇴해 있던 정구가 상소를 올렸다.

옛날 노양공 30년, 주경왕 때 담괄이 난리를 일으켜 왕자 영부를 세우고자 했는데, 영부는 경왕의 아우로서 실체는 담괄이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발각되어 담괄이 달아났고, 윤언다, 유의 등 5인이 함께 영부를 죽였는데, 왕명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자가 『춘추』에 그 일을 쓰기를 ‘천왕이 그 아우 영부를 죽였다.’ 하였고, 先儒는 그것을 논하여 ‘무릇 왕이 죽이는 것은 쓰지 않는데,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 뒤에야 쓴다.’ 하였습니다. 대저 천자는 죽이는 것을 專斷할 수 있고, 영부의 죽음은 마땅히 쓰지 않아야 할 텐데 書法이 이와 같았으니, 영부가 그 반역에 참여하여 듣지 않은 것을 聖人是 대개 죄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 실정을 따져 법을 정하는 뜻이 어찌 절실하고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또 영부의 죽음은 애초에 주 경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는 단지 막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춘추』의 의리를 해석하는데 있어, 좌씨는 ‘죄가 왕에게 있다.’ 하였고, 곡량자는 ‘지나쳤다.’ 하였고, 두예는 ‘골육을 해쳤다.’ 하였으니, 경왕에게 얼마나 누가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 경왕의 잘못을 다섯 대부가 빚어낸 것입니다.

오늘의 일이 우연히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영창대군)가 어리고 아는 것이 없음은 영부가 몰랐던 정도만이 아니며, 조정의 의논이 그치지 않아서 반드시 (처형하라는) 허락을 받으려 함은 또 경왕이 금하지 못했던 것보다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성상으로 하여금 장차 무슨 말로 『춘추』의 의리를 강론하는 천하 후세의 사람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깊이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대개 깊이 살피지 못해서일 따름입니다. 진실로 깊이 살피는 바가 있다면, 임금을 허물이 없는 곳에 들이고자 함은 신하된 사람의 큰 바람입니다. 이제 지난날의 의논들을 바꾸어 전하의 진정을 따르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반드시 그만두지 못할 것이 있음을 신은 압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이 앞뒤로 진술한 바를 깊이

해야리시어 여러 사람들의 의논에 흔들리지 마시고, 大義를 정밀하게 하고 大倫을 바르게 하신다면, 성상의 마음은 태연하여 유감이 없고 성상의 몸은 선하고 또 아름다움을 다할 것입니다. 후세에서 오늘을 봄은 오늘에서 옛날을 보는 것과 같아서 성인들이 모두 와서 모범으로 삼을 것입니다. 어찌 성대하지 않겠습니까.³³⁾

정구는 엄벌론자들이 대개 『춘추』를 거론하며 관용을 베푸는 일은 “의리를 막히게 하는 일(義理晦塞)”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스스로 『춘추』에 의거하고 있다. 즉 역모의 주창자가 아니라 다만 연루되었을 뿐인 사람을 처형하는 일은 의리에 어긋나며, 춘추필법으로는 왕법의 시행이 아닌 사적인 살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임해군의 경우에도 그가 정말 역모를 꾸렸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었으나, 영창대군의 경우는 고작 8세의 나이로 역모의 주창자가 되었을 리가 없으므로 아무리 그를 새 왕으로 옹립하려는 역모가 있었다고 해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명확히 할 수가 있었다. 정구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의를 정밀하게 하고 대륜을 바르게(精大義, 正大倫)”할 수 있다고 하여 다시 한 번 은의겸진론의 논지를 확인했다. 말하자면 ‘전의론’의 주장처럼 통치

33) 昔者魯襄公三十年，周敬景王有儻括之亂，欲立王子佞夫佞夫即景王之弟也，實不知儻括之欲立己也。未幾事發，儻括出奔，尹言多劉毅等五人，共殺佞夫，非王命也。孔子書之曰，‘天王殺其弟佞夫。’先儒論之以爲‘凡王殺不書，必殺無罪而後書。’夫天子主專殺，佞夫之死，宜不書，而書法如是，佞夫之不與聞，聖人蓋以無罪處之矣。其原情定法之意，豈不深切而著明也哉？且佞夫之死，初不出於景王，特莫之禁也爾。然而解『春秋』之義，而左氏曰，‘罪在王也’，穀梁子曰‘甚之也’，杜預曰，‘殘骨肉也’，其爲景王之累，何如也？然則景王之過，五大夫成之也。今日之事，偶然有所彷彿焉者，其確味無識，則又非但佞夫之不知也矣。廷論不已，必欲奉命，則又不甚於景王之莫之禁也哉？其欲使聖上，將何以有辭於天下後世，講『春秋』之義者乎？此臣之所甚懼也。然蓋未有所深察焉耳。苟有所深察焉，則納君於無過之地，人臣之所大願也。今將回前日之論，而思將順殿下之情者，臣知其必有所不能已也。伏願深諒臣前後所陳，勿爲群議所撓，以精大義，以正大倫，則聖心泰然而無憾，聖躬既善而盡美。後世之視今，猶今之視古，聖人也成來則焉，豈不盛哉？『光海君日記』 72권, 光海君 5년 11월 10일(甲子) 기사.

자의 친족에게 관용을 베푸는 일은 사적인 가치를 내세워 공적인 가치를 억압하는 일이 아니라, 반대로 친친의 인륜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바르게 하며, 동시에 의 역시 '과연 이 특별한 경우에 역적은 토벌한다는 명분만 좇아 무조건 극형으로 처리하는 일이 대의에 합당한가?'라는 고민을 함으로써 일방적이고 조급한 사법처리를 자제하도록 하기에, 대의를 정밀하게 하는 뜻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원익과 정구는 1608년에 이어 1613년에도 은의검진론을 전개하며 그들의 주장을 전은론으로 일축하던 엄벌론에 맞섰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는 성인인 왕실 인사가 역모의 주창자였다면 그래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입장이 분명하지 않았고, '비록 왕조에 실질적 위험이 없더라도, 법을 어겼으면 그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곽재우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정치적 처지는 1608년보다 더욱 불리해져 있었다. 결국 영창대군은 살해되었고, 인목대비의 폐출 역시 추진되었다. 이에 반대하며 "어미가 비록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효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³⁴⁾이라 주장한 이원익을 비롯하여 이항복, 이덕형 등 서인 및 남인계 재상들이 모두 처벌을 받으며 이루어진 '대북 독재'라는 특수한 정치상황은 결국 인조반정에 이르러서야 종결된다. 이 시기에는 은의검진론이 '異端邪說'처럼 공공연히 배척되고, 그 주장자들은 '全恩邪黨'으로 불리며 탄압되었다.³⁵⁾ 이는 단순히 상

34) 母雖不慈, 子不可以不孝. 『光海君日記』 87권, 光海君 7년 2월 5일(壬午) 기사.

35) 가령 全恩之說, 嚆矢邪議. 救蘊之論, 囊橐奸宄. 『光海君日記』 87권, 光海君 7년 2월 23일(庚子) 기사; 知有元翼, 而不知有聖上, 忍負聖上, 而不忍負私黨 (……) 全恩之說, 眩亂國是. 『光海君日記』 89권, 光海君 7년 4월 4일(庚辰) 기사; 全恩之說, 充塞義理, 眩亂是非. 『光海君日記』 99권, 光海君 8년 1월 26일(丁酉) 기사; 全恩邪黨. 『光海君日記』 110권, 光海君 8년 12월 23일(己未) 기사. 광해군 9년 1월에 성균관 생원 이진방 등이 올린 상소에서는 이이첨이 관용론을 공격한 것은 "邪說을 배척하여 聖孝를 빛내고, 이단을 공격하여 聖烈을 드날린(排邪說而彰聖孝, 攻異

대 당파의 주장을 배척할 뿐 아니라 그런 주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당을 불의, 불충의 당으로 규정하여 숙청하는 조선 당쟁사상 최초의 사례였다. 그리고 이런 정쟁 방식은 인조반정 후에도 이어지게 된다.

3) 이후의 논쟁

광해군대 이후 통치자의 친족 범죄 처리를 둘러싼 논쟁은 인조 1년(1623년), 폐세자 이질이 유배지에서 탈출하려다 실패했을 때, 인조 2년(1624년), 인성군이 이괄의 난에 연루되었을 때, 인조 24년(1646년), 소현세자의 세자빈인 강빈이 역모를 꾸민 혐의를 받았을 때, 효종 2년(1651년), 인조의 후궁 조귀인의 옥사, 숙종 1년(1675), 복선군과 복창군이 역모 연루 혐의를 받았을 때, 숙종 27년(1701년), 장희빈의 옥사 등 대략 17세기 중후반의 팔십여 년 동안 여섯 차례가 있었으며, 18세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빈도가 크게 줄고 논쟁의 규모도 줄어들었다.

그것은 이 시기에 왕실 친족의 역모 사건이 줄어든 때문은 아니었다.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은의결진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관용론은 오직 전은론으로만 불렸으며(그 주창자들조차도 그랬다), “의를 덮는 일(掩義)”이자 “법을 굽히는 일(屈法)”로서 “임시적인 편법(一時之權)”에 지나지 않는 私說 내지 邪說일 뿐이라고 다수의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³⁶⁾ 그나마

端而揚聖烈” 공로라고 했다. 『光海君日記』 111권, 光海君 9년 1월 13일(己卯) 기사.

36) 가령 屈義全恩. 『仁祖實錄』 2권, 仁祖 1년 5월 27일(丙辰) 기사; 屈法全恩. 『仁祖實錄』 47권, 仁祖 24년 2월 5일(壬午) 기사; 此, 殿下過於全恩, 屈其王法. 『孝宗實錄』 13권, 孝宗 5년 7월 4일(辛卯) 기사; 終不若景帝之於梁王, 屈法而全恩也. 『肅宗實錄』 35권, 肅宗 27년 9월 29일(癸丑) 기사; 以恩掩義, 亦可善處. 『肅宗實錄』 35권, 肅宗 27년 10월 8일(辛酉) 기사; 夫全恩之義, 出於一時之權. 『肅宗實錄』 35권, 肅宗 27년 10월 8일(辛酉) 기사.

그런 관용론은 주로 군주가 친족에게 처벌을 집행하기 전의 한동안 표면적으로 제시하는, 진정성이 떨어지는 제스처일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향이 본격화되려는 가운데, 조정에서 관용론과 엄벌론이 어느 정도 팽팽히 대결했던 때는 1624년의 인성군 처벌 문제와 1646년의 강빈 옥사, 그리고 1701년 장희빈 옥사 때였다. 이중 인성군의 경우에는 남인과 서인 사이에 당파적 대립이 있었고, 장희빈의 경우에는 세자(경종)의 입장이 고려되었으며, 강빈의 경우에는 역모 혐의에 워낙 불분명한 점이 많았는데다 군주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를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었기에 논쟁의 수립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1646년의 옥사에서 홍무적은 다음과 같이 상소하여 관용론을 주도했다.

신하의 입장으로서 누가 토벌하기를 청해야 한다는 義를 모르겠습니까만, 생각건대 예로부터 난신적자가 흑시라도 제왕의 지친 사이에서 나오면 은혜를 온전히 하라고 굳이 청하였던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임금 이 흑시라도 은혜를 손상시키는 데 이르러 변을 처리하는 도리에 부족함이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袁盎이 한문제에게 간하고 來濟가 당태종에게 간한 것을 두고 역적의 무리를 비호하고 악당을 편들어 그 임금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강빈에 대하여 이런 은혜를 손상하는 조치가 있으신데도 오늘 조정의 신하들이 위엄을 두려워하고 화가 무서워서 성상의 의사를 받들어 순종한다면 불충 중에서도 큰 불충입니다.³⁷⁾

인조반정에도 불구하고 점점 굳어져가고 있던 “전은론은 신하가 제기할 것이 아니며 군주의 아량에 관계될 뿐”이라는 통념을 반박하고자 한문

37) 人臣分義，孰不知請討之義乎？第念，自古帝王，亂臣賊子，或出至親之間，則固請全恩者，非爲亂賊也，恐其君或至於傷恩，有歎於處變之道。袁盎之諫漢文，來濟之諷唐宗，其可謂護逆黨惡而不愛其君者乎？殿下於姜嬪，有此傷恩之舉，今日廷臣，畏威恤禍，承順聖意，則不忠之大者，臣何敢黨附於作惡一寡婦，以負吾君乎？『仁祖實錄』 47권, 仁祖 24년 2월 7일(甲申) 기사.

제와 당태종이 역모에 연루된 친족을 관대히 처분한 데는 신하들의 간쟁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런 관용론은 “역적의 무리를 비호하고 악당을 편들어 그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護逆黨惡而不愛其君)” 것이 결코 아니라 군주가 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를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전은론을 주장하는 것이 불충이 아니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불충이라고 한 홍무적의 상소는 은의겸진론의 꺼져가는 명맥을 잇는 의의가 있었다(그는 광해군 시절, 폐모론에 반대해 유배되는 이원익을 옹호하다가 스스로도 유배된 적이 있다).

숙종대의 논쟁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논의가 보이지 않았는데, 장희빈을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했을 남인이 이미 몰락한 상태에서 최석정, 서문중, 신완 등 일부 온건파 서인 대신들이 ‘전은은 의와 법에 어긋나는 편법이지만, 세자의 입장을 보아 관용을 베풀라’고 비교적 강도가 약한 관용론을 제기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18세기 이후로 논쟁은 크게 줄고 약화되었다. 영조는 무려 52년이나 재위했으나 이렇다 할 논쟁이 없었는데, 영조 5년(1729년) 밀풍군의 옥사와 38년(1762년) 사도세자의 죽음에서도 신하들 사이에서 관용론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정조는 여러 역모 사건을 맞았으며, 신료집단 전체에 ‘군사(君師)’로서 군림하려는 그에 대한 신료들의 반발도 있었기에 논쟁이 벌어지기에 더 나은 조건이었다. 그래서 정조 1년(1777년)의 은전군, 13년(1789년)과 19년(1795년)의 은언군, 23년(1799년)의 화완옹주 처분 과정에서 주로 정조의 관용론과 신하들의 엄벌론 사이에 어느 정도의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정조는 “공법과 사은 두 가지를 모두 펴도록 하며”³⁸⁾ “각각의

38) 公法私恩之兩伸. 『正祖實錄』 4권, 正祖 1년 8월 11일(甲辰) 기사.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한쪽을, 어떤 때는 다른 한쪽을 증시한다”³⁹⁾는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은의겸진론과 비슷해 보이지만, 관용에서 私恩을 넘는 가치나 의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다소 사정을 둘 여지를 본다’는 이런 주장은 전은론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그만큼 설득력이 부족한 이 관용론에 신료들은 “의로 결단하여 사은을 없앤다”는 입장으로 맞섰으며,⁴⁰⁾ “역적을 징계하고 토죄하는 하나의 일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르게 유지시키는 큰 의리”⁴¹⁾이므로, 사은에 따라 관용을 베풀 경우 “나라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은 사람이 아니게 된다”⁴²⁾는 주장으로 정조의 “권도를 써서 중도를 얻는다”⁴³⁾는 주장을 반박했다.

정조 이후에는 그나마의 논쟁도 벌어지지 않았다. 통치자 친족의 처벌 문제가 제기될 때는 “의로 결단하여 사은을 없앤다”는 입장이 당연시되었으며, 통치자가 관용론을 언급할 때는 ‘나는 관용하고 싶으나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 그럴 수가 없다’며 일종의 말치레를 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었다.⁴⁴⁾

IV. 은의겸진론 논쟁의 의의

17세기 중반을 지나며 점점 은의겸진론 논쟁이 위축되고 감소된 것은

39) 彼一時此一時, 互輕互重. 『正祖實錄』 51권, 正祖 23년 3월 23일(壬午) 기사.

40) 斷義割恩. 『正祖實錄』 4권, 正祖 1년 8월 11일(甲辰) 기사.

41) 懲討一事, 卽撐天巨地之大義理. 『正祖實錄』 42권, 正祖 19년 3월 21일(壬申) 기사.

42) 國不國人不人矣. 『正祖實錄』 51권, 正祖 23년 3월 7일(乙丑) 기사.

43) 權而得中. 『正祖實錄』 42권, 正祖 19년 3월 18일(己巳) 기사.

44) 가령 全恩之敎, 亦所以仰體先大王聖心也, 蓋予之心, 卽先王之心也. 渠若頑不知悛, 更事跳踉, 則雖以先王曲保之心, 王法至重, 亦何可一向枉屈乎? 『純祖實錄』 2권, 純祖 1년 1월 6일(癸未) 기사: 先朝於此罪人, 終始全恩, 而至於其家眷之今番負犯, 大關風化, 但當罪其罪, 以懲其他. 『純祖實錄』 2권, 純祖 1년 3월 16일(壬辰) 기사

광해군대에 특정한 논의를 주장하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례가 수립되고, 은의겸진론이 전은론으로 왜곡되어 '사설'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은과 의를 모두 극진히 한다는 입장은 논리적으로 엄밀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대안이 불확실했으므로 반론을 받을 여지가 많았다. 그러나 그것이 공론장에서의 자유로운 논쟁을 통한 위축이 아니라, 현실정치의 상황에 따라 논의 제기 자체가 봉쇄되고 금기시되는 사상적 위축 과정에서 함께 위축되었음은 조선 후기의 정치사상의 자유롭고 다양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조선 후기에 들어 인/은의 가치가 정치적 공론장 전체에서 실종되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18세기 이후 禮에 대한 입장 차이가 중요한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군주나 사대부, 서민을 망라하는 모든 자연인이 똑같이 지켜야 할 마땅한 예'와 '군주와 왕실의 특별한 지위를 반영해야 할 예' 사이에서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가 초점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仁과 義, 親과 尊 사이의 논쟁으로 풀이할 수 있었다. 또한 왕실 인사의 사법처리를 둘러싼 논쟁을 '인이나 의냐'라는 맥락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이나 사냐'라는 맥락에서 읽을 수 있으며 그렇게 보면 조선 전기와 후기의 정론 사이에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은의겸진론은 본래 공적 질서에 대해 사적인 여지를 베풀 것을 주장하는 논의가 아니었고, 친족 사이에는 냉혹한 처분을 하기 꺼려하는 자세야말로 "대륜을 바르게(正大倫)"하는 일로써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군주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이 또한 公인 것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폐위하고 형제를 죽인(廢母殺弟)' 일이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역적을 처단한 떳떳한 일이었음에도 반정의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었던 것

이다. 또한 그것은 유교정치의 상식적인 요소, 즉 ‘친족을 차마 어찌지 못하는 마음’을 人情으로 긍정하고 현실정치과정이 되도록 그런 ‘인간적인 정서’를 반영하려고 했던 요소가 제거되었음을 뜻했다.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자식이 어찌 효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이원익의 한탄은 정치가 노골적인 권력투쟁에 머물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정서를 반영해 주기 바라는 조선인들의 소망을 반영하는 목소리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은의겸진론이 전은론이라는 이름으로 17세기 이후 정치적 공론장에서 퇴출된 것은, 그리고 특정 정론의 주장자들이 ‘전은론자’로서 정치탄압을 받았듯 ‘기년복론자’ 또는 ‘삼년복론자’로서 각각의 조건에서 정치탄압을 받게 된 것은 정치적 논의의 자유와 다양성을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정치적 논의가 ‘예제’와 ‘의리’라는, 일반의 시각에서는 실용성과 무관하고 추상적인, 주제에 골몰함으로써, 현실정치가 적어도 외견상으로나마 ‘인간적이던’ 색채를 잃음으로써, 그만큼 조선의 ‘정치체(body politic)’로서의 통합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인과 의는 유교사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치이자 덕목이지만 때로는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통치자의 친족이 범법자가 되었을 때 친친을 중시해 관용을 베풀 것인가, 의와 법을 중시해 처벌할 것인가도 그런 경우였다. 조선에서는 17세기 이전까지 이 문제를 상황에 따라 달리 접근하며 특별히 정치쟁점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되도록 인과 의의 두 가치를 모두 극진히 한다는 은의겸진론이 해답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은의겸진론은 범법 자체를 불문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하되, 통치자의 친족에게는 사형만은 면하도록 배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대안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심각한 역모죄에도 관용할 것인가, 그러한 예외 적용이 법의 공정성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닌가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다.

17세기 초, 광해군대의 은의겸진론 논쟁은 당시의 현실정치 상황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은의겸진론은 전 은론으로 왜곡되고, 의와 법에 어긋나는, 군주의 사을 중시하는 편법적 논의라는 통념이 형성되었다. 이후 점차 은의겸진론 논의는 위축, 감소되었으며, 통치자 친족의 범죄 처리 문제뿐 아니라 정치와 사상 전반에서 義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경향이 수립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의 정치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권력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통합성에도 유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주로 다룬 이 논문을 넘어서 당시 논쟁 참여자들이 사적으로 남긴 문헌까지 포괄하는 더 면밀한 조사를 기필하고, 이 논문의 주제를 확충하여 조선 법사상사, 정치사상사 전반의 흐름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요망된다.

【 참고문헌 】

『論語』
『孟子』
『禮記』
『周禮』
『原道』

『詩經集注』
『孟子集注』
『禮記清華錄』

『朝鮮王朝實錄』
『梧里先生文集』
『白沙集』
『陶菴先生集』
『定齋先生文集』

- 강광식, 『신유학사상과 조선조 유교정치문화』(서울: 집문당, 2000).
溝口雄三, 『중국의 공과 사』, 정태섭 역(서울: 신서원, 2004)
박병호, 「한국에 있어서의 孝 가치관과 法」(일본문학심포지엄 주최 『동아시아에서
의 인권과 정의』 발표문, 2000).
박충석, 『한국정치사상사』(서울: 삼영사, 1982).
유미림, 『조선후기의 정치사상』(서울: 지식산업사, 2002).
이승환, 『유교담론의 지형학』(서울: 푸른숲, 2004).
이재룡, 『조선, 예의 사상에서 법의 통치까지』(서울: 예문서원, 1995).
정호훈, 『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17세기 복인계 남인을 중심으로』(서울 :혜안,
2004).
최종고, 『한국법사상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1(전정신판)).
최진석, 「공자의 직(直)」, 『범한철학』 제60집. 2010. 3.
丸山眞男, 『일본정치사상사연구』, 김석근 역(서울: 통나무, 1995).

Abstract

The Early 17th Century Debate on *Uhnyigyomjinron* in Chosun and Its Political Meaning

Ham, Kyu-Jin

Ren(仁) and *Yi*(義) are both most fundamental ideas and values in Confucianism. But sometimes, there will be conflicts between them. If someone committed crimes and was found as the ruler's close relative, such conflicts could arise. We can hardly find clear and concrete answers in Confucian canons and ancient history, so there should be political and philosophical debates on these conflicts.

In early era of Chosun Dynasty, such conflicts could be solved informally, case by case, or by the principle of *Uhnyigyomjinron*(恩義兼盡論, Double Optimization of *En*(恩) and *Yi*). But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when King Kwanghaegun ruled, within the peculiar political climate, several difficult debates were developed between hard-liners and moderates.

As a result, *Uhnyigyomjinron* was misconstrued as *Jeonuhnron*(全恩論, Unconditional Realization of *En*), and they understood this principle as an expedient deviation from formal order and the norms of *Yi*. So ever since, *Uhnyigyomjinron* or *Jeonuhnron* declined and passed away. It meant a triumph of *Yi* principles over *Ren*, in every sectors of Chosun Society. The failure of *Uhnyigyomjinron* did influence the dwindling of the scope of political philosophy of Chosun and the stiffening of Chosun Society and Culture.

Key Word

Uhnyigyomjinron, *Jeonuhnrn*, King Kwanghaegun Era, Politics of Chosun Dynasty, Korean Political Philosophy

- 논문투고일 : 2013.1.2. 심사완료일 : 2013.2.8. 게재결정일 : 2013.2.13.